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조진우 초빙연구위원, cjw5@nypi.re.kr

이윤주 부연구위원, yjlee@nypi.re.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참여기구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참여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저출산과 고령화, 고학력과 저성장 등 사회여건이 변함에 따라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 변화가 발생함.

- 지금까지 '청년'의 이미지는 젊음, 열정, 패기, 희망, 미래세대 등과 같이 표현되며 기성세대로 진입하기 이전의 준비단계로, 막연히 20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3.5.22.제정)에서 청년의 연령을 만 15세에서 29세로 정한 것도 이를 반영한 사회인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관련 정책이 고용에 한정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관련 사업은 대상 집단인 청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존 사회 통념에서 변화된 관점을 보여줌.
 -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의 개념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연령의 상한기준은 29세에서 39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들이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연령보다 상한기준을 높인 이유는 청년실업 등으로 청년세대가 독립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성세대로 진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청년세대를 구분하는 조건이 독립생계 여부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외국의 정책사례에서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youth'는 10대 후반의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20대 초반까지 나이대를 상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기본법」이 정한 청소년의 범위와 일치할 뿐, 한국과 같이 20대 이상의 세대를 청년이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그만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의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을 보여줌.

▶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청년들의 정책욕구를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고용(또는 서울의 경우 주거)이외에 아직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
 - 선행연구¹⁾를 통해 청년문제의 본질이 학력과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자립단계로의 이행지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밝힌 바 있음.
-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청년참여기구 활동은 청년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표출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앞으로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관여해야 할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참여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참여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갈 청년의 의식 '청년다움'(Young-Perspective)을 제언함.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기준 제시

- 정책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이론을 검토하고 참여기구의 운영실태를 분석할 기준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 제도 및 실태 분석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017년까지 3년 이상 청년 참여기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 대구, 광주의 현황을 각 기관이 발간한 운영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행위자 FGI(집단초점면접) 및 면담

- 서울, 대구, 광주 지역 청년참여기구 참여경험자에 대한 FGI 및 각 시청 청년참여기구 운영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문헌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현황을 분석함.

1) 조진우(2016)

Ⅲ. 청년참여기구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정책대상으로서 청년과 청년정책

▶ 정책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의미

- 정책수립과정에서 대상 집단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정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 집단,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김덕형, 박형준, 2015, p.169).
-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이러한 대상 집단으로 특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은 청년을 보는 관점이 사회적 인식은 높으나 정치권력은 낮은 의존집단에서 스스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협동하는 수혜집단으로 바뀌고 있는 증거임(서인석, 2015).

[표 1] 정책수립과정에서 대상 집단 분류

구분		사회적 인식	
		긍정	부정
정치 권력	강	〈수혜집단〉 노인, 사업가, 퇴역군인, 과학자	〈주장집단〉 부자, 대규모 노동조합, 소수자(흑인), 전통·보수주의자
	약	〈의존집단〉 어린이, 엄마, 장애인	〈이탈집단〉 범죄자, 마약중독자, 조직폭력단

출처: Ingram, Schneider & DeLeon(2007), 서인석(2015) 재인용

2. 청년참여기구의 역할 및 기능

▶ 정책수립과정 이론에 따른 청년정책의 특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년참여기구 구성원을 정책집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집단으로 볼 경우, 정책수립과정의 절차는 의제설정 → 정책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로 구분됨.
- 지자체가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하는 최종 목표는 청년들을 실제로 이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그들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의 복리가 향상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음.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 등 헌법이 정한 공적 기관 종사자 또는 그 행위가 그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하며,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대상 집단으로, 일반국민 또는 정당 등 이익집단으로 구분됨.
- 청년을 일반적인 정책대상으로 볼 경우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하는데, 청년참여기구가 조례 상 조직으로 존재할 경우 이들을 공식적 참여자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Wilson(2001)은 정책 비용과 정책 이익에 따라서 전체 국민으로 분산되는지 혹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이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정책비용은 분산되고 정책편의는 집중되는 고객정치에 가까움. 고객정치는 정책 이익이 집중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이익을 누리는 집단의 조직 유인책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정책 비용은 광범위하게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비용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2] 정책 비용과 편의에 따른 정치의 유형

정책편의	정책비용	
	분산	집중
	분산	집중
	다수주의 정치	기업가 정치
	집중	이익집단 정치
	고객 정치	

출처: Wilson(2001), p.441, 전진영(2009), p.39 재인용

▶ 정책수립과정의 분석 · 평가 기준 도구

- Schneider & Ingram(1993)은 정책수립과정을 분석하는 네 개의 기준(정책정의, 정책반영성, 제도의 안정성,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제시하였음.
- 이 기준을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단, 정책정의는 청년정책의 개념규정에 대한 것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아직 정책정의가 없는 상태여서 분석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아 이를 참여기구와 이를 관리하는 행정체제와의 소통 정도로 대체하고자 함.

IV.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분석 - 서울, 대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소한 2015년부터(서울은 2013년) 청년참여기구를 제도화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 대구, 광주의 청년참여기구 현황을 분석함. 세 지역은 특별 또는 광역시 라는 조건이 유사하면서도 지역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비교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

1. 서울 · 대구 · 광주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근거

(1) 청년참여의 목적과 범위

- 세 지역 모두 청년참여를 청년정책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청년참여의 범위와 목적 규정에서 서울과 대구는 유사하고 광주는 차이를 보임.

- 서울과 대구의 청년참여 목적은 두 가지임. 첫째,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 지원, 즉, 자라나는 세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임. 둘째는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는 차원임. 후자의 목적이 규정하는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음.
- 광주는 청년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광주의 규정으로 미루어 청년이 참여하는 분야는 청년 당사자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2) 청년참여의 제도화 정도

- 세 지역 모두 실제적으로 청년참여를 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둔 지역은 광주뿐 임.
- 광주는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적인 시장활동과의 연계성을 공식화하였음. 대구는 청년위원회 규정을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와 훈령의 차이는 조례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합의의 결과라면 훈령은 시장의 단독 명령이라는데 있음. 서울은 공식제도 없이 청년허브의 사업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를 운영 중임.

[표 3] 청년기본조례에 나타난 청년참여 관련 규정 요약

항목	서울	대구	광주
조례제정일	2015.1.2	2015.12.30.	2015.12.28
조례목적 중	청년참여보장	좌동	좌동
기본이념	청년참여 범위제시	—	—
청년범위	만15세~29세 (공기업취업시 34세까지 연장)	만19세~39세	좌동
기본계획 포함사항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참여확대	좌동	청년의 시장참여 확대
참여확대 목적과 내용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경험지원,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의사 반영과 참여	좌동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의사 반영과 참여, 시 위원회 청년위원 수 증가 노력
참여기구	—	—	청년위원회
청년활동 지원기구	청년허브	청년센터,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센터

2. 세 지역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현황 및 분석

(1) 서울

- 서울은 청년허브에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를 통해 청년참여가 이루어짐. 청정넷의 목적은 “① 서울시의 청년정책 모니터링, ② 새로운 의제 발굴”²⁾임.

2) 2017년 서울청정넷 멤버모집 공고 중

- 청정넷의 출발은 2012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이 임명된 후 명예부시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청정넷 활동과 요구를 통해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됨.
- 청정넷은 2017년 제4기 멤버를 모집하였음(모집기간 3.31-4.17.).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예산배정 후 모집-예산 결산 전 해산' 등 제약을 받아 활동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임. 나이 이외에 참여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해 참여자의 수는 유동적임(2015년 271명, 2016년 376명). 중복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음.
- 모집대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및 청년그룹을 대상으로 함.
- 청정넷 참여자 선정 및 활동은 ①서울 청년정책 모니터링, ② 청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발굴 등 두 개의 분과로 나뉘어 각각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신청함. 신청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5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20개의 모임으로 나누어짐. 모임의 주제는 분과주제 속에서 캠프를 통해 정해짐.

(2) 대구

- 대구는 훈령(2015.3.10. 제정)으로 규정된 청년위원회를 운영 중임. 청년위원회의 목적은 ①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과 ② 청년문제 해결에 관한 협치 시정 구현임.
- 청년위원회는 2017년 3기 위원을 선발하였음(공개모집, 35명 이내, 임기는 1년임. 1회 연임 가능함). 청년위원의 자격을 “청년정책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지역 청년정책발굴 등 위원회의 역할에 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청년위원회의 기능(제2조)은 ①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 ② 지역 청년문제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의제 발굴 ③ 지역 현안 청년문제 도출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며,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분과위원회는 ① 기획소통분과-청년인재 네트워크 구축, 소통활성화 ② 일자리 창출분과-일자리 및 청년실업대책 관련 사항, 청년창업지원 관련 사항 ③ 문화복지분과-청년문화, 청년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청년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임. 청년위원회에 시청 공무원(고용노동과장, 청년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
- 청년위원들은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3) 광주

- 광주는 청년기본조례상 규정된 청년위원회를 운영 중임. 청년위원회의 목적은 ①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 ②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임.
- 청년위원회는 2017년 3기 위원을 선발하였음(공개모집, 50명 이내, 임기는 1년임. 1회 연임 가능함). 청년위원의 자격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대구보다는 자격조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청년위원회의 잠재적 목적이 청년에 대한 교육이나 육성일 수 있다고 해석됨.
- 청년위원회의 기능은 ① 청년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②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③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④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임.
- 시의 각 부서가 청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청년위원회 운영을 위해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역할을 하도록 규정함.

▶ 세 지역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분석

(1) 참여기구의 성격

- 서울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순수한 민간 청년단체 지원의 성격임. 그러므로 청정넷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음. 시는 청정넷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청년허브 운영진의 업무로 추진함.
- 대구와 광주는 시에서 정식 규정을 근거로 직접 운영함.
 - 대구는 청년참여기구에 청년 소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청년과 시 사이의 소통연계를 강조함.
 - 광주는 조례상 정식 기구임.

(2) 참여기구 참여자 선정

- 서울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청년 및 청년그룹”으로 하여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활동지가 서울일 경우에도 참여가능하며, 연령기준은 청년기본조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청정넷 참여자들의 연령이 30세를 넘긴 경우가 많았음(연령을 알 수 있는 2016년 참여자 376명 중 30대 참여자 비율 38%). 나이와 활동지 외에 제한이 없어 신청한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하다고 해석됨.
 - 다만 참여자들은 개별활동은 제약되고 자신이 소속된 소그룹 모임에서 의견을 내고 모임의 이름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음.
- 대구와 광주의 청년위원회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시 정원 이상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청년위원의 자격 규정에 더 부합하는 지원자로 선별함.
 - 대구는 거주요건이 없는 대신 청년정책에 대한 상당한 관련성을 요구함.
 - 광주는 광주시내 거주요건이 있는 대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 외에 다른 자격조건 없음.

(3) 참여기구와 시청과의 관계

- 서울은 민간위탁사업이므로 청정넷과 관련한 사항과 시청은 별개 조직임.
 - 보통 정부기관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게 되어 있음. 이 계획서를 심사해서 일단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는 위탁계약에 따른 사업계획 대로 수탁자가 이행함. 민간위탁사업의 계획 이행 중에 공무원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넷 운영 중에는 사업을 위탁받은 청년허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회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2015.9.18.).
- 대구와 광주는 시청조직이 직접 운영을 지원함. 청년위원회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함.

3. 청년참여기구의 활동 현황 및 분석

▶ 청년참여기구 활동의 공통점

- 세 지역 모두 청년과 관련한 행사가 있을 경우 청년참여기구 참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됨.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시와

청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참여기구의 활동결과로 남는 가장 큰 성과는 정책제언임. 2016년 세 지역의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한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세부단위사업 성격의 제안이 많았음. 이로써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목적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 청년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임. 그 외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인권이나 복지와 관련한 제안도 있음. 일부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될 경우 일반시정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도 있음.
- 세 지역 모두 청년활동의 공간을 지원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 실제로 공공건물이 어떤 집단의 활동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청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임(ex: 청소년수련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 정책대상인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한 결과가 그 분야의 전문 집단이 가진 원래 정책제언과 경쟁할 가능성이 보임. 시에서 한 분야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집단이 요구하는 정책과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한 정책이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
 - 이 때 청년담당조직이 청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이 더 많이 수용되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경우, 해당 분야의 당사자 집단이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시될 우려가 있음. 반대로 당사자집단과 청년제안이 같다면 굳이 청년집단이 제안할 필요가 없을 것임.

▶ 세 지역 청년참여기구 활동 현황분석

(1) 서울

- 서울의 청년참여기구 정책제언이 전달되는 과정은 청정넷의 모임활동을 통해 개발한 정책제언을 1년에 1회 개최하는 청년의회에서 제시함. 이후 시의 각 과제별 업무담당 부서가 해당 과제를 기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전체 진행상황을 청년담당부서가 관리하는 체계임.
 - 서울의 2016년 정책제안 26개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직접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지원정책을 확대 또는 개선하는 과제는 14개였음. 청년문제로 제기했지만 만일 시가 이를 채택해서 시행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불편적인 사업이 될 성격의 과제 5개, 처음부터 시정의 일반적인 정책제안 과제 4개였음(표-4).
 - 서울은 2015년 11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2016년 청정넷의 정책제안은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추진계획을 더 풍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4] 서울시 청년의회 2016년 제안과제 현황 및 과제 성격

제안과제	과제성격
주제 : 청년 시민교육 강화	
▶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청년학습장 신설 및 청년학교 예산 증액	청년예산지원
주제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및 문자통역 지원 바우처 도입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추진단 설치 ▶ 무장애 관광 인프라 · 서비스 · 상품 구축 및 개발 ▶ '17년 무장애 관광 5개 핵심사업 시행 ▶ 문자통역 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규 도입 및 문자통역사 일자리 창출 · 제공	일반시정 일반시정 일반시정 일반시정

제안과제	과제성격
주제 : 청년 1인가구 건강권 증진사업 도입	
▶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실태조사 실시 ▶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시스템 지원 ▶ 건강권 강화 캠페인 실시 및 1인가구 맞춤형 건강키트 배포	청년→일반 청년→일반 청년→일반
주제 : 취업준비 지원사업 구체화 및 확대	
▶ 취업날개 성장대여 서비스 확대 시행 ▶ 취업날개 서적대여 서비스 신규 도입 ▶ 진로·취업 특화 청년공간 개선	청년지원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제 : 청년공간 확대 및 운영 정상화	
▶ 청년의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 청년공간 조성 ▶ 청년공간 운영 표준안 마련(운영안정성, 공간문화 자율성, 공간지속성)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제 :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 청년수당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 지출증빙 폐지,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도개선 ▶ 후속연계 강화 등 운영방안 개선	청년지원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제 : 청년 금융부채 지원 확대	
▶ 서울시 자체 청년 금융·부채 실태 연구조사 실시 ▶ 청년 신용위기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 및 액수, 대상자, 지원인원 확대	청년지원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제 :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및 청년 공공주택 입주기준 단일화	
▶ 청년 수요자 중심 주거정보 통합플랫폼(온라인·오프라인) 신설 ▶ 청년 대상 공공주택 입주기준 단일화 및 세부 입주기준 마련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제 : 체험형 청년 자전거 안전문화교실 운영	
▶ 자전거 시민강사 양성교육 강화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일반 청년→일반
주제 :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 강화 및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관리 및 홍보 강화 ▶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	일반시정 일반시정 일반시정

(2) 대구

- 대구의 정책제안 체계는 서울과 유사함. 한 가지 차이점은 서울이 청년들의 모임에서 제안된 정책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비해, 대구는 청년모임의 정책제안을 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안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침.
- 대구의 정책제안 전달방식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온'이라는 정책개발 모임활동을 통해 제안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시에 전달함. 이때 청년위원들의 역할은 모임활동을 주도하는 것임. 이후 과정은 서울과 유사함.
 - 대구의 2016년 정책제안 22개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직접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지원정책을 확대 또는 개선하는 과제는 12개였음. 청년문제로 제기했지만 만일 시가 이를 채택해서 시행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보편적인 사업이 될 성격의 과제 9개, 그 외 청년정책관실 신설제안이 있음(표-5).
 - 대구는 2016년 12월 기본계획 성격인 「2020 청년희망 대구」를 발표하였음. 기본계획에는 2016년 '청년온'이 제안한 과제가 거의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대구시 '청년온' 2016년 제안과제 현황 및 과제 성격

제안과제	과제성격
주제 : 청년 건강	
▶ 청년 건강 프로젝트 '청년건강스텝'	청년지원
주제 : 청년 교육	
▶ 지역 특성화 청년교육 및 공간활용 지원사업 '청춘 공감소'	청년지원
주제 : 청년 문화예술	
▶ 대구 문화예술 육성	청년→일반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청년→일반
▶ 대구 문화예술 향유	청년→일반
주제 : 청년 복지	
▶ BMW 청년교통카드	청년지원
주제 : 청년과의 소통	
▶ 대구광역시 청년DB 구축 사업	청년지원
▶ 청년 one-stop 서비스	청년지원
▶ 청년의 Do Dream!-청년정책 홍보	청년지원
▶ 대구광역시 청년인식 개선 프로그램	청년지원
▶ 대구광역시 청년 무공해 Zone	청년지원
▶ 청년 MAP 구축사업	청년지원
▶ 청년정책관실 신설	시정
주제 : 여성청년 지원	
▶ 대구지역 청년(여성)의 생활고충 실태조사	청년→일반
▶ 청년여성 일자리 카페 너두나두	청년지원
▶ 원룸 및 다세대 주택 여성안전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청년→일반
주제 : 청년창업지원	
▶ 청년들이 일할 맛 나는 회사	청년→일반
▶ 청년창업기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청년지원
▶ 창업기업들의 일할 환경을 만들다	청년→일반
▶ 청년푸드트럭은 달리고 싶다	청년→일반
▶ 공간으로 청년 창업에 날개를 달다	청년지원
주제 : 청년 취업지원	
▶ 대구광역시 표준이력서 지원사업	청년→일반

(3) 광주

- 광주의 청년정책제안 체계는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서울, 대구와 차이가 있음. 과제 제안은 청년위원회의 분과단위로 이루어짐.
- 청년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안들은 서울, 대구와 같은 과정으로 시청 내에서 검토되고 기존 시책에 반영됨.

- 광주는 청년위원회의 분과별로 실제 실행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최종 제안했기 때문에 과제의 수는 서울, 대구에 비해 적음. 제안과제 7개를 분석한 결과, 청년과 직접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지원정책을 확대 또는 개선하는 과제는 6개였음. 청년문제로 제기했지만 만일 시가 이를 채택해서 시행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보편적인 사업이 될 성격의 과제 1개가 있음(표-6).
- 광주는 2016년 10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2016년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추가 시행될 것으로 보임.

[표 6] 광주시 청년위원회 2016년 제안과제 현황 및 과제 성격

제안과제	과제성격
주제 : 경제 · 일자리	
▶ 빛고을 청년야시장 사업	청년지원
주제 : 교육 · 진로	
▶ 또래 진로공유 플랫폼 '넌꿈넌꿈' 개설 ▶ 청년소환제 도입	청년지원 청년지원
주제 : 문화 · 삶의질	
▶ 청년릴레이 인터뷰 ▶ 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 간의 1:1 매칭 ▶ 광주청년 문화카드 지급(개인) ▶ 시청 시민숲을 활용한 청년 무료웨딩 사업(개인)	청년지원 청년→일반 청년지원 청년지원

▶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은 정책의제 선정과 형성과정에는 충실히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평가에 참여한 흔적은 없음.

4. 청년참여기구 SWOT 분석

▶ 3개 지역 청년참여기구의 운영과 활동을 Schneider & Ingram(1993)에 근거하여 재정리한 ① 정책 반영성, ② 제도 안정성, ③ 전문성, ④ 소통 등을 기준으로 SWOT 분석함.

(1) 강점

- 세 지역 모두 청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서울 청년참여기구의 강점은 민간주도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에 있음. 청정넷은 민간의 청년단체가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되어 오던 것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임. 시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관심있는 의원들의 지원으로 제안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 대구 청년참여기구의 강점은 청년위원회가 시와 청년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가 소통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이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청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함으로써 제안내용의 질을 제고하였음.

- 광주 청년참여기구의 최대 강점은 청년위원회가 조례상 조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기능이 시정 참여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임. 시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시정참여의 수단도 갖춘 셈임.

(2) 약점

- 서울 청년참여기구의 약점은 이 기구가 제도화되지 않은 점임. 예산 상 청년허브에 지원하는 사업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임. 따라서 청정넷은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성격임. 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넷 운영을 공모를 통해 위탁받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운영진과 운영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중립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임. 처음부터 민간활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중립적, 단속성을 특성으로 키웠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정책제안이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제도화 미흡을 약점으로 지적함.
- 대구 청년참여기구의 약점은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조례상 기구인데 비해 청년위원회는 훈령 상 설치된 기구이어서 상대적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점임. 실제로 청년위원들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임을 주도하므로 이를 조례상 명시하는 것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함.
- 광주 청년참여기구의 약점은 청년위원들의 활동과 청년센터활동에 사이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임. 정책제안은 청년센터 활동과는 별개로 청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발됨. 청년센터가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여기에 선정된 단체는 자연히 오랫동안 광주지역에서 청년활동을 한 실적이 있음. 이에 비해, 청년위원들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므로 두 집단 간 인적인 연계가 부족하게 됨. 해결방법의 하나로 대구의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이 청년센터와 청년위원회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3) 기회요인

- 서울의 청정넷은 이미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등 스스로 축적한 정책적 성과가 있음. 이런 활동의 경험은 앞으로 활동을 길잡이 하고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아울러 서울이라는 지역이 잠재적인 청년자원이 풍부함.
- 대구의 청년위원회는 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으로 우수한 정책을 많이 제안한 성과는 청년참여기구가 발전하는데 기회가 될 것임. 제안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면 시와 청년참여기구 모두 든든한 지지기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임.
- 광주의 청년위원회는 개인적인 정책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 대구와는 다른 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음. 시 각종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제도화한 것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써 활동하게 되는 청년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려고한 제도의 취지와 일치함.

(4) 위험요인

- 참여기구가 작동할 때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참여자가 개인의 문제를 끌어들이어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임. 청년참여자 개인이 처한 문제도 청년문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경향은 더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제외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서울의 청정넷은 민간이 주도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를 모집할 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활동자들이 누구인지 외부에 정확히 공개되지 않음.³⁾ 대구, 광주의 청년위원회가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응모자 중 일부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점,⁴⁾ 그리고 그들의 일반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점과 비교됨. 이는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활동임에도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대구와 광주는 서울에 비해 민간청년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의 기대치가 높아 청년참여의 실체가 왜곡될 우려가 제기됨.

▶ 서울

강점	약점
▶ 민간주도 5년의 역사성과 전문성 ▶ 청년명예부시장(2017년부터 명예시장)제와 결합한 의사소통 통로의 일원화 ▶ 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지원	▶ 제도화되지 않은 사업기반 ▶ 청년기본조례와 배치되는 청년범위 ▶ 청년과의 소통을 청년허브가 독점(공무원과 일반청년 사이에 청년허브가 존재하여 청년-공무원 직접 소통 부족)
기회	위험
▶ 청년활동을 통해 조례제정, 청년수당 도입 등 성과 창출의 경험 축적 ▶ 다양한 민간청년활동단체의 존재(청년인적 자원 풍부)	▶ 참여자에 대한 정보부족 ▶ 복지지원, 민원성 사업제안 다수

▶ 대구

강점	약점
▶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계가 제도화됨 ▶ 청년위원회가 청년 소통의 컨트롤타워임을 명문화 ▶ 정책제안에 전문가의 필터링을 통한 질적 제고 → 민원보다는 시정전반에 대한 개선안에 가까운 정책제언	▶ 조례상 체계인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센터에 비해 청년위원회는 훈령 상 조직인 위계체계와 청년위원회의 소통 컨트롤타워 역할은 배치됨. ▶ 시의회와의 제도적 연계 부재
기회	위험
▶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 개발 다수 → 사업추진에 성과를 낼 경우 청년활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정책제안의 전문성이 높아서 청년의 틀에서 전체 시정으로 확장성 확보	▶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서울따라하기 경향(참여인원 압박) ▶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좁은 사업제안 (특정인이 관여될 가능성 노출) ▶ 이미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분야에 과도한 집중

3) 활동보고서에는 뒷면에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누구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음.

4) 일례로 2017년 대구 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시 102명 접수, 30명 선발

▶ 광주

강점	약점
▶ 제도 완비 : 청년위원회 조례상 명기 ▶ 청년기구의 주 역할이 시장참여로 명확히 드러남. ▶ 시 위원회에 청년 참여 명시 ▶ 청년정책을 조인할 외부 전문가 존재	▶ 임의적 분과로 청년의 다양한 욕구반영 역부족
기회	위험
▶ 청년위원 개인의 활동과 역할이 반영되는 체계 ▶ 시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 보장을 통한 청년의 활동영역확대 보장 ▶ 시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 설치(2017.2.)	▶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서울따라하기 경향(참여인원 압박) ▶ 전문성의 압박으로 청년다움 상실우려 → 실행가능성의 압박 ▶ 기존 청년활동가 중심 청년센터와 일반 청년을 공모한 청년위원 간 인적 네트워크 약함

5. 청년참여기구 관련 행위자 의견

- 서울, 대구, 광주 지역 청년참여기구 참여경험자와의 FGI와 청년담당 공무원 자문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함. 한 지역에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 한 경우에도 되도록 발언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기술함.⁵⁾

(1) 소통문제

- 전반적으로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청년참여 기구를 관리하는 시 담당공무원의 사이는 긴밀한 것으로 파악됨.
 - 청년들이 시와 소통할 때 느끼는 부담의 상당부분은 직접 접촉하는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고 공무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청년들은 시장이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는 공통적으로 믿음이 있었음.
 - 청년들은 자신이 지역 청년을 대표해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함. 이에 반해서 시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역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 이런 불균형이 서로의 활동에 부족함을 느끼는 원인으로 보임. 청년들은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민간청년단체와의 관계설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활동범위 문제

- 청년들은 시가 자신들을 시장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함. 시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장이 참석하는 근사한 행사를 차질없이 주관해주는 정도라고 느낌.
 - 청년들은 시가 정책에 개입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행사에 동원하는 객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개선되길 희망함.
 - 소수의 청년운동가가 전체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경향 보임. 그 결과 민간청년단체와 연관이 없이 개인으로 참여하는 청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3) 제안된 정책과제 문제

- 청년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과제가 시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점에 불만이 있음. 청년담당부서가 이를 다 처리할 수 없다는

5)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FGI : 2017.3.23.-24., 대전 시티호텔, 청소년정책연구원 회의실, 참여자: 서울(차0영, 이0휘, 박0준), 대구(김0환, 최0진), 광주(한0은, 이0영)

사실은 이해하지만, 청년담당부서가 다른 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함. 제안은 많이 하라고 해놓고 정작 채택되지 않아서 허망한 느낌을 준다고 함.

- 반면에 담당공무원들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높은 수준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민원에 가깝다고 생각함. 청년담당부서에서 제안들을 소관부서에 검토의뢰하면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함. 그 이유는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새롭지 않고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청년의 몫을 더 할당하는 등 청년을 새로 포함시키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임.
- 담당공무원들은 제안과제의 성격으로 볼 때, 기초단위 지자체가 주민생활과 더욱 밀착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활동은 광역단위보다는 기초단위에서 더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 더불어 특정 분야의 정책에서 청년문제를만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했을때 다른 집단의 정책 수요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⁶⁾ 청년이 아닌 분야의 정책제언은 그 분야 이해집단과의 관계조정이 필요함.⁷⁾ 지금까지는 실제 제안내용이 해당 분야 이익집단의 욕구와 다르지 않아 갈등은 없었지만, 그럴 경우 굳이 청년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있음.

V. 제언

청년참여기구가 지자체에 정착하기 위한 제언과 이 기구의 성과를 중앙정부 차원까지 확대하여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 활동을 통해 원래 설치 목적이 성취되었는가에 있음. 청년참여기구의 목적은 지역청년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임.
 -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청년참여기구와 지자체간 소통의 과정을 보는 것과 그 소통의 결과 실제로 지자체의 일반 청년, 나아가 시민전체의 복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게 됐는지 여부가 될 것임.
- 3개 지자체는 각각 청년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사항은 청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각 지역의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연동하면 효과적일 것임.

▶ 청년에 대한 새로운 구분방법이 필요함.

- 세 지역의 청년기본조례가 규정한 청년의 범위는 각기 달랐음. 기능별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을 규정하는 입장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달라짐.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나이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6) 주택담당부서는 청년주거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조건의 1인가구문제가 희석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함.

7) 일례로 장애인정책분야에서 장애인단체의 요구

- 실제 지금까지 제안된 청년정책이 대부분 분배 또는 재분배정책이어서 비록 청년의 연령대는 넓게 잡아도 그 정책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음.
- 소외된 청년만의 특징에 주목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정책을 청년정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연령구분이 아니라 그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청년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는 등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청년의 인식 ‘청년다움’(Young-Perspective)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함(사례예시).

-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청년정책만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함.
 - 앞으로 청년의 인식 ‘청년다움’(Young-Perspective)이 기존의 가치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이 전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증명해야 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참여기구 활동 경험은 향후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 ‘청년다움’의 발현으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장유유서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음.
 - 나이를 이유로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개인인 청년은 그걸 직접 항의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임. 이런 문화적인 행태의 개선을 청년참여기구가 의제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 행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청년의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의 인식 ‘청년다움’으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관습을 고칠 수 있음.
 - 노동계의 숙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청년의 인식을 적용할 수 있음. 노동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가가 지불되는 고용구조를 만들면 능력을 갖춘 신규 진입자가 차별받지 않게 되므로 청년문제로 다룰 수 있음.
 - 가족관계에 청년의 인식을 적용하면 가족 간에 생활비 부담이나 가사분담 등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면서 청년들의 결혼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참고문헌

광주광역시(2016),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2015), 2015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보고서
 광주광역시(2016), 2016년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보고서
 김덕형, 박형준(2015), 한국 관료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165-187.
 김유빈 외(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김용성(2008),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외 편(2014),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김종진(2017), 해외사례 분석 통한 청년정책연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2017),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2016년 청년ON 정책제안 활동보고서
 대구광역시(2016), 2020 청년희망 대구
 배용환(2002), 정부와 전문이익집단의 정책이해, 정치행태, 그리고 이익대변모형, 한국정치학회보, 36(1), 113-138.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네트워크(2017), 서울청년네트워크 시즌3,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네트워크(2016), 서울청년네트워크 시즌2,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인석(2015), 한국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탐색적 지형화(mapping)연구: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론적 과제와 확장,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2015 여름): 113-139
 전진영(2009),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 정책의제의 설정 및 대안채택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2), 35-65.
 정상호(2006),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분석적 개괄, 한국정치학회보, 40(1), 91-113.
 조진우(2016),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이슈브리프 제28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chneider, A.L. & Ingram, H.(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광주광역시청 <http://www.gwangju.go.kr/>